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를 조성·관리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관리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서로 일치·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관리기
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26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法律 第7513號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
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8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공여 금지(법 제38조의2 및 제95조의2 신설)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법 제83조제12호 신설)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5월26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法律 第7514號

한국공항공사법중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중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및 공항개발사업 등을”을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